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내 용

「암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전에 타 국가지원금(긴급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등 3명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의 의료지원금을 공제하지 않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한금액을 초과하였다.

[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 초과지원 현황

(단위: 원)

진료비 발생연도	사업명	성명	생년월일	병명	지원일자	급여	비급여	비고
2016	긴급 의료 지원사업	○○○	○○ ○○○○	폐의 악성신생물	2016.09.20.	1,363,070	479,460	
201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폐암	2017.05.02.	1,183,510	506,850	급여중복 지원 1,183,510
2016	긴급 의료 지원사업	○○○	○○ ○○○○	유방의중양부의 악성신생물	2016.04.25.	279,290	1,932,330	
201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유방암	2016.12.27.	45,250	200,000	한도초과액 200,000
2015	긴급 의료 지원사업	○○○	○○ ○○○○	직장의 악성신생물	2015.12.30.	51,010	751,010	
2015	암환자 의료지원사업			대장암	2016.04.15.	501,710	1,000,000	한도초과액 751,010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시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한 ○○○, ○○○, ○○○로부터 각각 1,183,510원, 200,000원, 751,01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